

# 정보기술협정(ITA)

## 이행성과에 관한 연구 : 정성평가\*

###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이 지 수\*\* Ji-Soo Yi

####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V. 연구결과 및 시사점
II. 선행연구	V. 맺음말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정략적으로 평가해오던 우리나라의 제1차 정보기술협정(ITA1) 이행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다. ITA와 같은 자유화 협정의 성과와 한계는 정량지표를 위주로 평가되었고, 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심도 있는 논의는 쉽게 간과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WTO 협정이자 우리가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평가되는 ITA1의 성과를 정성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는 것은 자유화 협정의 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메운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ITA는 물론 FTA를 포함한 자유화 협정의 질적 이행성과의 향상을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0126)  
심층 면담에 응해 주시고 유용한 통찰을 공유해 주신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기업체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제1저자

연구결과는 품목분류의 전문성과 함께 자유화가 이뤄지는 산업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유화 협정의 수혜를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자유무역협정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이하 ITA1이라 함)의 최대 수혜국으로 주목받아왔다 (Rodrik 1995, Joseph and Parayil 2008). ITA1은 WTO 각료회의의 각료 선언 형태로 타결되어 세계 IT 제품 교역의 92.3% 차지하는 40개국, 총 203개 품목 대상으로 IT제품의 무관세화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1997년 정식 발효된 WTO 협정이다. 이 협정은 WTO의 협정 중 가장 큰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동시에 각 가입국이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협정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부터 협정 대상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이후 10년이 훌쩍 넘도록 2차 협정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ITA2로 마무리되어 2016년 가입국별로 이행에 들어갔다.

ITA1이 이행된 후 ITA2가 이행에 들어가기 까지 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의 ITA1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도 빛이 바랬다. ITA1의 무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IT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IT 수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했고 IT 수출 기여도는 2002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크게 하락했다<sup>1)</sup>. 이러한 정량지표는 선행연구에서 우리 성과가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지 혹은 정량지표가 보여주지 않는 간과된 성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ITA1 이행에 관한 국내 평가와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확대된 ITA2나 FTA를 포함한 다른 자유화 협정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시사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ITA1 이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보완하고 향후 ITA2의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연구가 시급하다는 진단에 근거해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ITA1 이행성과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해 우리나라 ITA1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ITA2와 여타 자유화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자유화협정의 성과에 대한 기존 이론을 정

1)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 자료

성적인 면에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ITA2와 FTA를 포함해 자유화협정의 이행에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주안점과 시사점을 살펴본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로써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ITA1의 성과에 대한 이론을 종합하고 실사례를 통해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연구의제를 설정했다. 첫째, ITA1의 국내 이행의 성과는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둘째, 이 평가 기준에서 우리나라 ITA1의 이행은 성공적이라 평가 가능한가? 셋째, ITA1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의제에 답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평가 틀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여 ITA1 이행에 관련된 정부기관, 관련 산업계 관련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통된 의견과 패턴을 선행연구와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sup>2)</sup>.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먼저 II 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ITA1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한 기준을 정리한다. III 장에서는 II 장에서 도출한 평가범주,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ITA1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틀과 연구 방법론을 설정한다. IV 장에서는 평가 결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V 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끝맺음한다.

## II. 선행연구

### 1. WTO 차원에서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 1) 정보기술협정 개요

정보기술협정(ITA1,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WTO 협정 중 가장 순조롭고 성공적인 협상 과정을 거쳤다. ITA1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일환으로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담에서 29개 가입국에 의해 체결되었고 그 이듬해 발효되었다. 현재까지 가입국은 81개로 증가해 전 세계 IT 제품 교역량의 92%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권혁재, 2013; 김호철, 2015; 장근호, 2005). ITA1은 자유화가 적용되는 대상도 우루과이라운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광범위하다 (Fliess, Sauv e et al. 1997, Joseph and Parayil 2008, Mann and Liu 2009, Lee-Makiyama 2011). 또한, 복수국가 간 협정이면서도 1995년 미국이 처

2)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 김나영. (2011). 질적 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참조

음 제안한 후 1996년 12월 합의를 완료해 단기간에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무역자유화 방식도 급진적이어서 1997년 발효 후 2000년까지 단기간 내에 협정의 대상 제품 모두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최혜국대우 원칙(MFN basis)을 바탕으로 협정의 비가입국까지도 무관세 혜택을 적용한다.

ITA1은 WTO에서 이뤄진 일반적인 다자간 무역협상의 방식과 다르게 협정 적용 대상 제품을 HS 코드로 분류 가능한 품목(Attachment A)과 분류가 불가능한 품목명을 기재하여 각국이 협정 이행에 반영한 품목(Attachment B)으로 구성했다 (Mann and Liu 2009). 보통 시장개방요청과 제안방식 (request offer)의 접근법을 따르지 않고 6개 범주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과학기기)로 관세철폐 대상을 정했다. 또 저개발국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협정 가입 시에 2005년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관세철폐를 2000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했다.

협정 대상 제품의 범위에 대한 이견과 HS 품목분류체계를 따르지 않는 모호한 특혜 적용 대상 제품 범위의 문제는 가입국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고 ITA1의 타결 후에도 미결의 문제들을 남겼다. 이에 따라 ITA의 적용 범위의 확대 즉 ITA2에 대한 논의가 ITA1의 개시와 함께 시작됐으나 후속 협상의 타결은 쉽지 않았다. 이후 18여 년 간의 긴 협상 끝에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나이로비 각료회담에서 다시 54개 가입국이 모여 약 1조3천억 불 이상의 교역량을 차지하는 201개 제품을 추가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확대 ITA (ITA2)가 타결됐다. 이로써 2016년부터 3년간 추가 대상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 2) 정보기술협정의 성공과 IT 산업의 특수성

ITA1 협상이 순조로웠던 것은 물론 협상 진행방식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IT 산업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Mann and Liu (2009)는 ITA1이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 (Plurilateral Agreement) 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의 협상 대상자들이 행하는 양자협정인 FTA 보다도 더욱 급진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ITA1은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 원칙을 기초로 비가입국이더라도 적용 대상 제품이라면 모두 관세철폐를 적용하기 때문에 체결국만을 대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FTA 보다 관세인하의 범위가 크다<sup>3)</sup>. 또

3) EU 무역 위원회 Leon Brittan은 ITA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최대 관세인하라고 평했다.

한, 비교적 단기간에 광범위한 대상 제품에 대해서 이뤄진 무역자유화임에도 다른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협정들과 비교하여 국내외 반발도 적었다.

Bayoumi and Haacker (2002)는 이러한 협상 과정의 순조로움은 IT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IT 산업은 컴퓨터, 사무기기, 가전, 통신기기, 전기부품과 통신 관련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IT 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큰 파급력을 갖는다<sup>4)</sup>. 또 IT 기술은 다양한 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해당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성이 있어 IT 기술과 제품의 가격 인하는 IT 기술에의 접근성을 높이며 경제 전반의 혜택을 가져온다.

Mann and Liu (2009)은 IT산업이 높은 가격 탄력성이 있으며 주요 수출국이<sup>5)</sup> FDI를 활발하게 진행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IT 산업의 발전은 FDI를 유인하고 세계화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산업의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 이러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반 IT산업을 근간으로 한 세계화 요구가 커졌고 ITA1 타결에 대한 이해의 합치가 이뤄져 결국 ITA1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이끌었던 것이다.

## 2. 가입국 차원에서의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 1) 자유무역 체제로서<sup>6)</sup>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평가

ITA1 가입국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로써 ITA1을 이행한 성과와 이 제도를 통해 비제도적인 면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 평가 되었다. 이 중 자유무역을 위한 체제로써 ITA1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핵심은 관세철폐 적용대상 제품을 폭넓게 인정하는 제도를 이행하였는지의 문제다. IT 기술은 기술융합 (convergence)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기술과 융합돼 신제품과 신기술을 만들어 내며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 때문에 컴퓨터(자동차료처리장치)는 IT 기술의 기초 제품으로

4) 실제 1990년 이후 전 세계 IT산업의 수출입이 총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세계 상품무역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예를 들어,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수출은 1996년 약 6,260억 불 정도로 1990에서 1996년 매년 평균 13% 성장했다.

5) IT의 주요 수출국으로 ITA를 주도한 국가를 Fliess, B. A., et al. (1997)는 “Quad” 그룹 국가, 즉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캐나다를 지목하고 있으나, Mann and Liu (2009)에서는 미국의 역할에 한정지어 설명했다.

6)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나 WTO의 협정과 협정의 이행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 WTO 아래서 시도된 다양한 협정의 국내 이행 법규, 제도, 제도 이행을 위한 운영 등의 자유무역의 제도적인 측면을 WTO 체계 또는 자유무역 체제라고 통칭한다.

7) HS 품목분류에서는 “자동차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ITA1의 핵심 대상으로 합의가 쉬웠던 반면 컴퓨터와 함께 작동하는 다양한 통신장비, 보조장치,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가전, 소프트웨어 등과 이들 기술이 접목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는 ITA1의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이견이 있었고, 통일되고 일관되게 IT 산업 자유화를 이행하는데 가입국마다 차이가 있었다.

Taster Jr (2000)는 ITA1은 대상 제품을 HS 코드로 분류 가능한 품목 (Attachment A)과 분류가 불가능한 품목 (Attachment B)으로 나누는 접근법을 사용하여<sup>8)</sup> HS 품목분류의 원칙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여 음향 및 영상 기능을 갖춘 넓은 범위의 제품까지 협정에 포함할 수 있었고<sup>9)</sup> 컴퓨터와 통신장비 간의 세율 차를 단기간에 없앨 수 있었다.

하지만 Dreyer and Hindley (2008)은 ITA1의 이 접근법이 기술변화가 빠른 IT제품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체계로서 한계에 도달했으며 협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TA1은 엄격한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택하여 다기능 기기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다. Lin (2011) 역시 EU에 제기된 ITA1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ITA1 체결 당시 개발되지 않았던 제품들은 목록에서 배제되고 기존에 목록에 있던 제품들도 새로운 기술에 접목되면서 ITA1에서 배제되는 열거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더욱이 이러한 열거주의의 한계와 가입국의 자의적인 품목분류가 합쳐지면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지만, ITA1과 관련된 분쟁 해결은 오로지 사후적인 해결방법인 WTO 분쟁 해결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리하자면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로써 ITA1이 이행성과는 IT 산업 발전에 따라 보다 포괄적으로 관세철폐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와 이로 인한 분쟁에 대비해 사전적인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자면, 자유무역 체계로서 ITA1의 성과는 <표 II-1>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로 규정한다.

8) FTA나 다른 협정에서 관세양허와 철폐 대상은 HS 품목분류 (보통은 6단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HS 품목분류는 국가 간 자의적인 품목분류와 관세율의 적용이 교역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HS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분류 기준을 말한다.

9) 그러나 가전과 같이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ITA1의 단기간 타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협상 과제로 남겼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ITA1의 제도적 성과 평가기준

저자	평가기준
Mann and Liu (2009)	업계의 IT 산업 무역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협정 이행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Tasker Jr (2000)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대상 제품을 폭 넓게 인정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Dreyer and Hindley (2008)	협정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Lin (2011)	자의적인 품목분류 방지하고 일관된 협정을 적용을 위한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품목분류와 관련된 사전적인 분쟁예방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

## 2) 정보기술협정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비제도적인 면에서의 ITA의 성과는 ITA1의 이행이 ICT 산업 수출입, 제조, 기술 역량의 확산, 투자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돼왔다. 그러나 IT 산업의 특수성<sup>10)</sup>에 기인하여 ITA1이 가져올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이론적인 주장의 선명함과는 대조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성과가 명백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

Bora (2004)는 1988년 이후에서 2004년까지 ITA1 발효 전후 대상 제품의 수출 추이의 변화를 통해 ITA1이 ICT 성과를 분석한다. 1988년에서 ITA1의 관세철폐와 이행되는 2000년까지 수출은 11배 이상 증가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1991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2001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Joseph and Parayil (2006)은 ITA1 가입 개도국과 비가입 개도국 간의 ITA1 발효 전후 ICT 제품의 수출입 성장률을 분석했는데 1999년에서 2003년 사이 ITA1의 비가입국이 모든 품목에서 수출입 성장률이 더 높았다. ICT 제품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와 세계적인 경쟁 증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ITA1이 ICT 제품 수요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평가된다.

Ernst(2013)는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기된 ITA1의 긍정적인 성과가 인도의 사례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ITA1은 인도와 같이 제조업(특히 전자제조업)이 낙후된 국가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화를 요구한다. 인도의 전자산업은 인도에 제조기반 없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는데, ITA1은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쇠퇴를 가속했다. 또한, 중국이 제조기지로 부상하면서 그나마 존재하

10) II, 1, 2) 참조

던 제조 네트워크도 대부분 중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에 따른 고용효과나 기술보급효과도 매우 미미했다. 장근호 (2005) 또한 ITA1의 이행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문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odrik(1995)은 한국의 급격한 성장은 자유화 자체보다는 투자를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이 한국에 대한 투자 요구를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다고 평했다. Earnst and Lundvall(2000)은 ITC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 증가는 적절한 인적자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자본 시장 등 국제적인 제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ITA1의 이행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 <표 II-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결국, 한 국가의 자유화 협정의 이행 평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유무역 체계를 적절히 수립하였는지와 더불어 비제도적인 측면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이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표 II-2>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ITA1의 비제도적 성과 평가기준

저자	평가기준
Kraemer and Dedrick (1999)	ICT 제품의 가격인하
	ICT 기술의 확산과 보급
	ICT 기술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확대
	ICT 기술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ICT 기술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증가
Ernst (2001)	제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의 해결
Ernst and Kim (2002)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
Bora (2004)	ITA1 협정 대상 제품의 수출 추이
Joseph and Parayil (2006)	ITA1 발효 전후 ICT 제품 중 컴퓨터, 통신, 부품의 세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입 성장률
Joseph and Parayil (2008)	세계화된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



###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ITA1의 이행성과 평가를 위해 정성적인 연구 방법을 채택해 정량적인 자료에 대한 해석을 관련 정부 부처, 산업 단체, 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sup>11)</sup>. 인터뷰 대상은 첫째 IT 산업과 자유화 협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을 것, 둘째 ITA1의 이행과 ITA2 협상과 이행과정에 참여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관세청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추천을 통해 선별했다<sup>12)</sup>. 인터뷰 결과의 분석은 평가 항목에 대한 공통의견으로 분류하고 사전에 이론적으로 예측된 평가 결과와 인터뷰로 나타난 경험적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패턴 매칭’ 방식에 의거 진행했다. 사례연구 방법에서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평가와 경험적으로 관찰한 패턴이 일치하는 경우 평가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연구결과의 기술은 인터뷰 내용 중 시의성이 큰 것은 되도록 그대로 인용을 했으며,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게 주장된 이론을 바탕으로 세부 사례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넓은 안목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도 추가했다<sup>14)</sup>.

- 
- 11) 인터뷰는 2018년 6월에서 7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일정에 맞춰 개별 면담 형식으로 사무실에 부속된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 12) ITA1의 이행과 관련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각 1명, 한국전자통신진흥원 3명, 기업체 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 13) Yin (2011) 사례연구방법 (서아영, 서경식 역). 서울: 한경사. (원서 출판1984) 참조.
  - 14)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표 III-1〉 우리나라 ITA1 이행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틀

평가범주	평가목표	평가분야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인 측면	국내 ITA1 이행 제도의 성과평가	업계의 IT 산업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이해를 모니터링하고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정 대상 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유효하게 운영되었는가?
		Attachment B와 같이 품목분류의 모호함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자의적인 품목분류 방지하고 일관된 협정 적용을 위한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품목분류와 관련된 사전적인 분쟁 예방 제도가 유효하게 운용되었는가?
IT 무역확대 및 무역역량 강화	ITA1 이행에 따른 국내 IT 및 IT 관련 산업 역량 강화 성과평가	ITA1의 이행이 ICT 제품의 수출입 교역량의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ICT 기술의 타산업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ICT 기술로 인한 고용과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는가?
		ITA1의 이행이 우리 기업의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는가?
		ITA1의 이행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였는가?

이 연구의 취지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범주와 평가목표 그리고 일부 평가기준을 채택하여 〈표 III-1〉와 같은 심층 면담에 적용 가능한 평가틀을 구성했다.

## IV. 평가 및 시사점

### 1. IT 산업 자유화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성과

피면접자들은 공통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ITA1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와 제도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의 ITA가 됐던 ITA2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확장되는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지 간에 협정을 위해 모든 물건을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HS코드와 연동을 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실제 업체가 느끼는 협정의 효과는 품목분류 문제와 연동이 되지요. 다른 나라가 협정 대상 품목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정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화 협정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품목분류의 분쟁이라든지 어려움의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sup>15)</sup>”

ITA1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sup>16)</sup>’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 양허관세의 별표<sup>17)</sup>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행됐고 이 별표로 적용 품목의 국내 세분류<sup>18)</sup>, 연차 별 적용 관세율이 정해졌다.<sup>19)</sup> Attachment B에 열거된 품목도 기획재정부에서 국내 10단위 HSK 품목분류체계로 흡수해 세분류해 관세율을 정했고 관세청에서 이를 적용했다.

이러한 관세인하의 범위와 품목분류 절차는 관세청 품목분류 웹 포탈에 공개됐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의 사전적인 분쟁 예방 제도도 운용됐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IT제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연구하고 지침형태로 기업에 공유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약 18년간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ITA1과 관련된 분쟁사례 총 13건을 살펴보면, 기각은 3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경정을 결정한 사례가 5건 및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가 5건으로 관련 분쟁에서는 포괄적인 관세철폐를 허용했다.<sup>20)</sup>

15)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16) 대통령령 제289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7) ITA1의 경우 별표 1의 가)의 일부 품목으로 들어가 있다가 확대 ITA (ITA2) 품목의 경우 별표 1의 다)로 추가됐다.

18) 자유화 협정은 품목분류체계에서 소호(Sub-heading) 즉 6단위에서 이뤄지지만, 6단위 이후 세분류는 나라마다 달리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 이행 단계에서 10단위 세분류를 적용한다.

19) ITA1의 경우 관세철폐가 모두 이뤄져, 대상 품목 별 관세율만 기재됐고, ITA2의 경우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관세양허 안이 기재되어 있다.

20) 조세심판원 결정례 데이터베이스. 검색 기간 2000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일. 검색어 ITA, 정보기술협정

피면담자들은 제도적인 면에서 ITA1의 국내이행은 기존의 WTO 체제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TA1의 국내이행에서 세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열거주의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ITA1을 국내 이행하는 데 있어서 관세율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 개정하고, 관세청에서 이행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으나 아래 피면담자의 진술과 같이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기재부와 집행 기관인 관세청 간 HSK 세분류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장기간 이행되다 보니 관세율표 제 개정 배경에 대한 문서도 남아 있지 않고 담당자도 바뀌고요, 관세청은 과세전 적부심, 품목분류위원회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 관세율표 제 개정을 하는 기재부에 대해서는 민원회신도 그렇고 적절한 절차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요……. (중략)<sup>21)</sup>”

또한, ITA1의 열거주의의 한계로 인해 관세율표에 정확히 기재된, 협정 제정 당시 혹은 국내 관세율표 제 개정 당시 구 기술에는 협정이 적용되고 신기술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기술의 빠른 유입을 오히려 막기도 했다.

“품목분류를 하는 공무원은 정확하게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업체는 ITA 협약의 기본 취지가 신기술, 첨단기술, 정보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 넓게 낮은 관세를 적용해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받아들여 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ITA1의 취지에 맞는 발전된 신기술 유입이 되려 어려워지고 옛 기술은 인정해주고 발전된 신기술은 인정 안 해주고...(중략)<sup>22)</sup>”

마지막으로 Attachment B 품목에 대한 국내 세분류는 이 외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무엇보다 분쟁의 소지가 많지만, 국내 세분류이다 보니 WCO 차원에서의 해결방법이 없고 국내 해결을 바랄 수밖에 없다 보니 열거된 기술이나 품목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방법이나 애초에 열거된 관세율표를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sup>23)24)</sup>.

심층 면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내용은 품목분류를 아는 정도 이상의 전문성이 있어야 자유화 협정의 제도적 이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기술과 신기술의 진보 방향, 업계의 역량과 이해관계를 파악한 가운데, 품목분류체제로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전

21)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2)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3)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내용 요약

24) 이 외에도 WTO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분쟁 해결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 승소하여도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관세가 소급하여 환급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문성을 키우고 발전시킬 체계가 부족하다고 피면담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품목분류 체계로 적절히 표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협상과 이행을 담당 관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발전하고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업무량이 과다하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워낙 많아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중략) 기업이 직접 영향받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데 말이죠...(중략)<sup>25)</sup>”

정리하자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ITA1의 이행은 WTO 체계에 따라 성실하고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졌지만, 제도적 이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국내 이해를 반영하고 발전시켜가는 전문성과 사전적인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절차의 운영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됐다.

## 2. IT 산업 무역확대 및 무역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성과

### 1) IT 무역확대와 IT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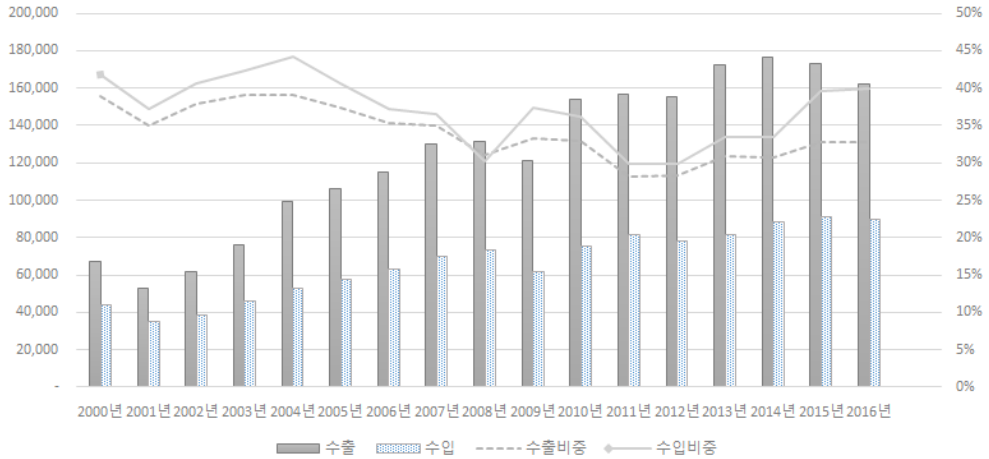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이 무역확대나 무역역량 확대에 이바지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피면담자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수집된 2000년 이후 ICT 산업의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고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IT 무역확대에 ITA1이 이바지한 바에 대해서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ITA1의 이행 단독의 성과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림 IV-1〉은 ITA1의 실질적인 관세철폐가 이뤄지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ICT 품목의 수출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수출입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수출액의 34%, 수입액의 37%의 비중을 ICT 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피면담자들은 2000년 이후 IT 산업 수출입의 확대에 ITA1이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이 시기 왕성했던 국내 대기업의 역할과 세계적인 IT 산업의 활성화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언급했다.

25)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그림 IV-1〉 ICT 제품 수출입, 수출입 비중 (2000 - 2016)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 통계 포털 ITSTAT(<http://www.itstat.go.kr>) 원자료에서 재구성

“ITA1의 수혜로만 우리나라 IT 무역이 확대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기간산업이다보니 국가에서 무역 지원도 물론 했지만, 산업육성 정책도 합쳐졌고, 기업들이 역량을 잘 발휘해서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sup>26)</sup>

면담에서는 2000년 즈음 국내 대기업이 IT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여러 번 언급됐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된 1990년대 해외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던 기술을 2000년대 우리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국내 통신과 컴퓨터 보급이 급속히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통신 관련 인력이 대거 양성, 배출됐고 이들은 국내 다른 산업에서도 컴퓨터와 통신 기술을 배포하고 확산하는 기반됐다<sup>27)</sup>.

26)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27)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내용 요약

〈표 IV-1〉 ITU ICT 발전지수<sup>1)</sup> (2009년 ~ 2016년)

국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한국	7.23	2.00	7.80	1.00	8.40	1.00	8.56	1.00	8.57	1.00	8.85	2.00	8.78	1.00	8.80	1.00
아이슬란드	7.06	4.00	7.12	7.00	8.06	3.00	8.17	4.00	8.36	3.00	8.64	4.00	8.66	3.00	8.78	2.00
덴마크	7.18	3.00	7.46	3.00	7.97	4.00	8.29	3.00	8.35	4.00	8.86	1.00	8.77	2.00	8.68	3.00
스위스	6.83	8.00	7.06	9.00	7.67	8.00	7.68	10.00	7.78	13.00	8.11	13.00	8.50	5.00	8.66	4.00
영국	6.70	12.00	7.03	10.00	7.60	10.00	7.75	9.00	7.98	8.00	8.50	5.00	8.54	4.00	8.53	5.00
홍콩	6.78	10.00	7.14	6.00	7.79	6.00	7.68	11.00	7.92	10.00	8.28	9.00	8.54	7.00	8.47	6.00
스웨덴	7.27	1.00	7.53	2.00	8.23	2.00	8.34	2.00	8.45	2.00	8.67	3.00	8.47	7.00	8.41	7.00
네덜란드	7.06	5.00	7.30	5.00	7.61	9.00	7.82	6.00	8.00	7.00	8.38	7.00	8.36	8.00	8.40	8.00
노르웨이	6.78	9.00	7.12	8.00	7.60	11.00	7.52	13.00	8.13	6.00	8.39	6.00	8.35	9.00	8.45	9.00
일본	6.89	7.00	7.01	11.00	7.42	13.00	7.76	8.00	7.82	12.00	8.22	11.00	8.28	11.00	8.32	10.00

자료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기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4) 원자료에서 재구성

1) ICT에 대한 접근성(ICT 인프라를 평가), 이용도(ICT 이용 현황을 평가), 활용력(ICT 활용 기술 및 교육을 평가) 등의 지표를 활용, 각국 ICT 발전 및 정보격차를 평가한 지수

〈표 IV-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ITA2가 발효되던 2016년까지 UN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가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줄곧 1, 2위를 다투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IT 활용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IT 기술이 확산하는데 ITA1은 IT 기술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 피면담자들은 대체로 기여를 인정을 했지만 그 영향은 한정적이었다고 평했다.

“...IT산업의 성장은 한국에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미국, 아이슬란드 등에도 발생했던 시대적 흐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ITA로 각종 하드웨어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IT 기술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ITA가 없었다고 IT산업의 발전이나 확산이 없었을 거라고 보기는 애매하죠....(중략)<sup>28)</sup>”

28)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 2) IT 기술 역량과 ITA1

피면담자들은 IT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성장세에 있었던 2000년대까지는 ITA1으로 혜택을 받았지만 2010년 이후 세계 ICT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sup>29)</sup>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ICT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피해를 걱정하고 대응하는 처지가 됐다고 평했다.

ITA1은 ICT 분야 투자와 고용을 결정하는 제조 거점의 선정에서 관세장벽에 대해 고려를 없앴고, 이에 따라 제조 인력의 인건비, 기술개발 인력의 역량 등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과 동남아가 급부상했고 제조 거점이 이들 나라로 집중됐다. 이에 따라 <그림 IV-2> 와 같이 ICT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대체로 증가한 반면,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대체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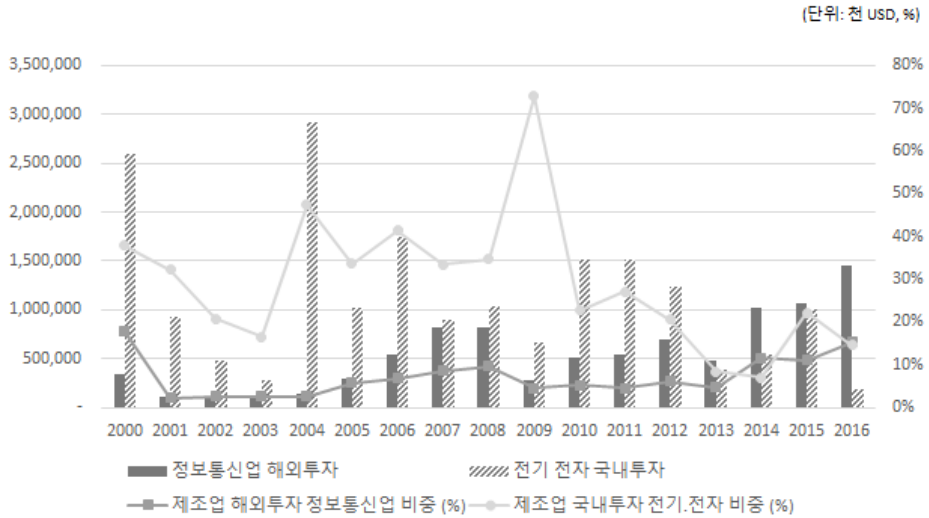
“제조 거점은 근접된 시장 규모, 인건비, 물류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중략) ICT 제품들은 ITA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 생산해도 관세가 없고 부피가 작아서 운임도 적기 때문에 제조 거점을 특정 국가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IT 제품 제조 거점으로써 매력이 있었지만, 인건비나 접근성이 좋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가 성장하면서 입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중략) 국내에 소재한 다국적 기업들은 인건비 대비 고품질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주로 했고, 노동 집약적인 생산 라인은 해외로 이전해 왔죠.(중략)<sup>30)</sup>”

29) 2000년대 연평균 6에서 7%대 성장률을 유지하던 세계 ICT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2%대 수준으로 둔화됐다. 김희성, “ICT 수출 위기 … 신규 수출 전략 및 융합 제품 발굴로 돌파해야”. Hello&첨단뉴스.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3&idx=33858](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3&idx=33858) 2017년 4월 11일, 중 인용.

30) 2018년 7월 12일 심층 면담 중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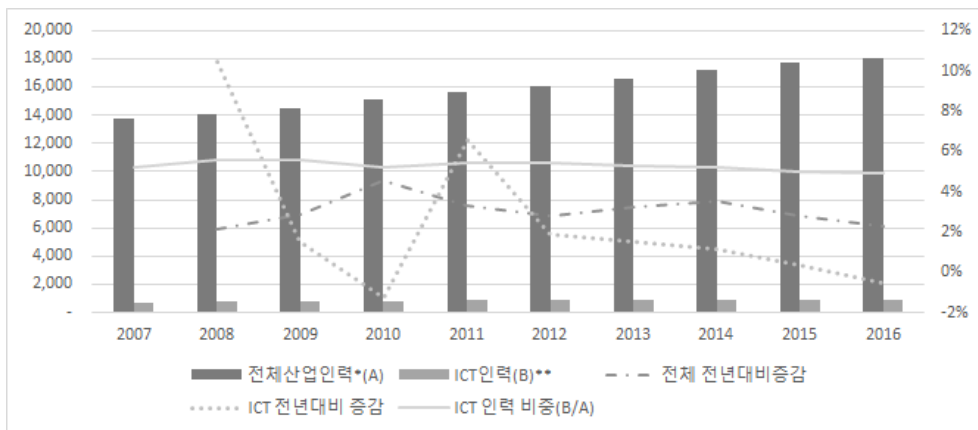
〈그림 IV-2〉 정보통신업 해외투자 대비 전기·전자 국내투자 (2000-2016)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211.171.208.92/odisas.html>) 및 산업부 통계 포털 (<http://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원자료에서 재구성, 정보통신업 국내투자는 세분류가 없어 전기·전자 국내투자로 대체.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그림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A2의 발효 전까지 우리나라 산업인구의 증가율에 비해 ICT 인력의 증가는 더뎠다.

〈그림 IV-3〉 전체 산업인력 대비 ICT 인력, 증감 비율 (2007-2016)<sup>1)</sup>



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http://gokea.org/bbs/>) 원자료에서 재구성

한 국가가 ICT 제조 거점이 되는 것은 ICT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ICT 제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데에서 영향을 준다. 이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여야 OEM에 머물던 국가가 ODM, OBM으로 발전하고 자유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개발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제조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점하였는지에 대해 피면담자들은 회의적이었다. 특히 일부 ICT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리 역량이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자주 지적돼 온 사실이다.

“우리가 ICT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일부 부분에만 강점이 있죠……. (중략) 시장 규모는 늘었는데 비해……. (중략)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근본이 되는 소재라던가 기계는 다 외부에 의존하고 나머지 통신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지 않는 거 같고……. (중략)<sup>31)</sup>”

또한, 변화한 ICT 시장에서 IT 기술개발의 저변이 되어야 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도 고민을 더 했다.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정보격차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변화한 세계 ICT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드물다고 평가됐다.

“휴대폰도 그렇고, ITA1에서는 수직계열화돼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으로 폼췌. ITA1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이런 체계가 유효했던 면이 있죠. 하지만 ITA2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중략)<sup>32)</sup>”

“최근 트렌드가 융합제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융합제품, 트렌드 제품을 중소기업체들이 하는 게 적절한데 원천기술이나 지식, 자금도 문제가 되고, 스타트업도 힘들죠.(중략)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sup>33)</sup>”

“ITA2부터는 벌써 수직계열화가 깨졌다고 봐요. (중략) 대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내 보내고 난 후에도 부품교체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현지 부품 조달이 많아지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삼성, LG만 잡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을 수 없고……. (중략)<sup>34)</sup>”

“ITA2는 예를 들어서 AV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도 치열하고요. 저희가 ITA2의 이행 기간을 길게 잡기는 했지만, ITA2에서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sup>35)</sup>”

31) 2018년 6월 18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2)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3)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4)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35) 2018년 6월 25일 심층 면담 중 인용

### 3. 시사점

제도적인 면과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의 이행성과를 평가한 심층 면담은 향후 ITA2와 다른 자유화 협정의 이행에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먼저 상품 분야 자유화 협정이 유효한 제도로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협정의 대상 품목을 이해하고 품목분류체계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전문성은 단순히 품목분류를 찾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업계의 이해를 품목분류 체계로 분석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말하는데 업계는 물론이고, 협상과 이행을 담당하는 관료 모두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상대국과 협정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자유화 협정의 이행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화되는 산업의 역량이 자유화와 함께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화되는 산업이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유화에 따른 수혜와 피해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기존 이론과 이번 연구에서 동일하게 주장됐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핵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산업계의 풍토를 갖춰 나가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세계 ICT 시장의 기술은 융합을 중심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 융합과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넓은 저변으로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중요해 졌다. ITA1의 성과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성장에 편승해 발전해왔다면, ITA2에서는 이러한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지속적인 자유화의 혜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발전이 보다 도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풍토를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tiglitz (2004)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ITA1과 같은 무역자유화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국가에 따라 혜택이 되기도 하고 재난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ITA1과 같은 자유화 협정의 이행은 ITA1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평가될 만큼 우리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것은 ITA1에 의한 자유화가 또는 더 넓게는 어떤 무역 자유화 협정이 절대적으로 선이기 때문이거나 악이라서 그랬다가 보다는 우리 산업이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수혜가 되었고 향후 확대 적용되는 ITA2나 다른 자유화 협정에서 우리가 역량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 V. 맺음말

이 연구는 ITA1의 국내이행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심층 면담을 통해 평가해 향후 ITA2의 이행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시작했다. 선행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비제도적 평가기준을 적용해 면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제도적, 비제도적인 면에서 ITA1은 대체로 성공적이었으나 보완할 점과 한계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로부터 자유화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품목분류를 위한 전문성의 확보나 자유화되는 산업의 역량 강화가 중요성을 갖는다는 시사점도 찾아보았다.

이 연구는 ITA1의 국내이행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첫 시도였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무역협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규정해 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향후 ITA2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광범위한 논의를 짧은 지면에 담기 위해 ITA1에서 다루지 못한 IT 분야 비관세장벽의 문제는 이번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둔다.

궁극적으로 이 글의 평가 결과는 ITA1과 같은 자유화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산업 역량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 권혁재 (2013), “WTO 정보기술협정(ITA) 개정의 쟁점과 영향,” 「SERI 경제포커스」(제 421 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호철 (2015), “WTO 정보기술협정(ITA) 현황과 쟁점,” 「통상법률」 제124호, pp.75-111
- 장근호 (2005), “WTO 정보기술협정(ITA)의 파급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8권 제6호, pp.2947-2965.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3). 2013 ICT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주)명진씨앤피.
- 한국정보통신진흥회 (2015). 2015년 ICT 국제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서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06
- Bayoumi, M. T. and Haacker, M. M.(2002), *It's not what you make, it's how you use IT: measuring the welfare benefits of the IT revolution across countries,*

- Lond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Bora, B.(2004),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nd World Trade. Information Technology Symposium*,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 Bora, B. and Liu, X.(2010).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World Scientific Studi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3. pp.13-38.
- Dreyer, I. and Hindley, B.(2008),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Adapting the ITA to 21st Century Technological Change,"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CIPE) Working Paper* (06/2008). pp.1-37.
- Ernst, D.(2001), "From Digital Divides to Industrial Upgra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sia Economic Development,"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Economics Series*, No. 36, pp.1-38.
- Fliess, B. A., et al. (1997), *Of Chips, Floppy Disks and Great Timing: Asses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okyo: the Institute Franc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FRI) and the Tokyo Club Foundation for Global Studies.
- Joseph, K. and Parayil, G.(2006), "Trade liberalization and digital divide: 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of WTO," CDS Working Papers No. 381. pp.1-44.:
- Kraemer, K. L. and Dedrick, J.(1999),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ross-country studies*, Irvine: Center for Research 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s.
- Lee-Makiyama, H. (2011), *Future-proofing world trade in technology: Turning the WTO IT Agreement (ITA) into the International Digital Economy Agreement (IDEA)*,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 Lin, T.-Y. (2011), "Systemic Reflection on the EC-IT Product Case: Establishing an "Understanding" on Maintaining the Product Coverage of the Current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World Trade*, Vol.45 No.2 pp.401-430.
- Mann, C. and Liu, X.(2009),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sui generis or model stepping stone," In Richard Baldwin and Patrick Low (Eds.),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182-216.
- Rodrik, D.(1995), "Getting interventions right: how South Korea and Taiwan grew

- rich," *Economic policy*, Vol.10 No.20, pp.53-107.
- Stiglitz, J. E.(2004),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18 No.1, pp.89-89.
- Tasker J.(2000),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building a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hile avoiding customs classification dispute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6 No.3, pp.917-948.
-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Retrieved June 19, 2017,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inftec_e/inftec_e.htm)

#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Ji-Soo Yi

---

## Abstract

This paper evaluates Korea's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1),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ories in trade liberalization. ITA1 and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were evaluated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and the implication that is not shown as numbers has often been igno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s academic importance in filling the gap in knowledge regarding the success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As well, it has practical importance in exploring implications for continuing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e ITA2 and further implementing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

〈Key Words〉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 products